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기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72

발의연월일: 2024. 11. 5.

발 의 자:김기현・김정재・조정훈

김대식 · 김 건 · 이달희

김상욱 • 인요한 • 서천호

서일준 • 박형수 • 곽규택

박성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.

그러나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(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) 이상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, 폐업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통한 영세사업자의 소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폐업 후 3년(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) 이상 지난 후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창업중소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10항제3호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0항제3호 중 "폐업 후"를 "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(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)이 경과하기 전에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10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6조(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	제6조(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		
세액감면) ① ~ ⑨ (생 략)	세액감면) ① ~ ⑨ (현행과 같		
	<u></u> 이 교		
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	10		
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		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			
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.			
1. ·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		
3. <u>폐업 후</u> 사업을 다시 개시하	3. <u>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</u>		
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	(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		
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	경우에는 2년)이 경과하기 전		
	<u>에</u>		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		
① · ② (생 략)	① · ② (현행과 같음)		